



국 세 청

함께 만들어가는
대한민국 세미래

수신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귀하
(경유)

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

1.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2.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'발급일의 다음날까지'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귀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고,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스템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개정내용 -

개정 전(현재)	개정 후(2012.1.1.이후)
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	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

끝.

국 세 청



국세조사관

이오섭

행정사무관

양동구

전자세원과장

전결 10/18

신수원

협조자

시행 전자세원과-524

(2011. 10. 18.)

접수

우 110-705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11층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/ <http://www.nts.go.kr>

전화 02-397-7595 / 전송 02-725-7174 / greenlos@hanmail.net / 대국민공개